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· 박철성 부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
의원입니다.

□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상행위 문화를
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‘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시는 안전한 시민보행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상 영
업시설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시설물의 적정 분포,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, 부적절한 위치의 시설물 이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본 개정안은 보도상 영업 시설 운영위원 구성에 교통전문가를 추가하고, 보행자의 진입 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구체화하며, 위생과 청결 유지를 위해 가판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항 이외 물품 판매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